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54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강승규
이양수 · 엄태영 · 이인선
박충권 · 박덕흠 · 김정재
김형동 · 서천호 · 김장겸
최수진 · 강선영 · 김예지
서명옥 · 우재준 · 김용태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 중 “제39조의19”를 “제39조의20”으로 한다.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를 각각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로 하고, 제3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9조의17제9항”을 “제39조의18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9조의17제5항”을 “제39조의18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9조의16제2항”을 “제39조의17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20제5항”을 “제39조의21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1條(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各號와 같다. 1. ~ 6. (생 략)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u><신 설></u>	第31條(老人福祉施設의 종류)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9조의20----- ----- <u>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근로 안전 대책을 마</u>

<u>제39조의15</u> ~ <u>제39조의21</u> (생략)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39조의17제9항</u>에 따른 Heim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u>제39조의17제5항</u>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39조의16제2항</u>을 위반하여	<u>런하여야 한다.</u> <u>제39조의16</u> ~ <u>제39조의22</u> (현행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와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9조의18제9항</u>----- ----- ----- -----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39조의18제5항</u>----- ----- ----- ③ ----- ----- -----. 1. <u>제39조의17제2항</u>-----
--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 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u>제39조의20제5항</u>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 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 자·가족 ④·⑤ (생 략)	----- ----- ----- 2. <u>제39조의21제5항</u>-----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